

의안번호	제 3 호
의 결 연 월 일	2018년 7월 6일 (제365회)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 출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출연월일	2018년 7월 6일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3
----------	---

제출연월일 : 2018년 7월 6일

제 출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구성목적 : 의회에 제출되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 위 원 수 : 13명 이내로 한다.

2. 제안이유

- 제11대 의회의 개원에 따라 1년씩 상설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예산결산 업무에 대한 심사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해 나가고, 심사기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의회의 예산 통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
-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및 제72조

관계법령 발취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②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특별위원회) 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선임 등) ①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위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

④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또는 교체 선임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예산안 심의) ①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도지사나 교육감으로부터 시정연설 또는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③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72조(결산의 심사) ①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치도록 한다.

③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고 도지사나 교육감 및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8조제3항을 준용한다.